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2268	채물손괴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민섭(기소), 유승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기하(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 6. 13. 선고 2024고정2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현재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및 사회통념상 적합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위 토지에 자재를 갖다 놓으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D에게 연락하였더니 D이 대문 앞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두어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옮겨 놓을 당시 D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는 D의 의사에 따라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옮겨 놓은 이 사건 컨테이너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을 통한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된 점, ③ 피고인으로서의 자신의 주거지로의 출입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기는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 바닥 부분 등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의 구조 및 이 사건 컨테이너와 대문 사이의 거리 때문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들어 올릴 경우 파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건너편 과수원 쪽 작은 도랑으로 밀어 넣으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컨테이너가 과수원 쪽으로 떨어지면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않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하여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미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로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는 타인의 주거지나 농경지가 있는 등 이 사건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둘 마땅한 다른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컨테이너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을 통한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컨테이너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통하여 본 후 바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컨테이너로 말미암아 대문을 통한 출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등으로 컨테이너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로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져다 둔 사람이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고, 지게차 업자가 컨테이너를 옮겼을 때 부서질 가능성에 대하여 애기함에도 '부서져도 상관없다. 건너편 도랑에 쳐 넣어 달라, 수로 안으로 부숴버려라, 무조건 밀어 넣어라' 등의 얘기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종류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도로 건너편으로 옮겨 자두밭 아래로 떨어뜨린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지상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C' 회장인 D과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권에 관해 분쟁을 겪어 왔으며, 피해자 E는 D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0.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옮겨 놓은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를 도로 건너편으로 옮겨 그곳 자두밭 아래로 떨어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6박스, 문짝 1개, 열풍기 1대, 발전기 1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물품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 녹취파일 불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정 _____

 판사 김양호 _____

 판사 김성열 _____